

제2부 국가책임: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한 국제책임

[간단한 들어가는 글: 일본정부와 다른 국가들은 일본군성노예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제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아래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국제책임을 진다. 사실과 법적용 요약]

I. 사실의 주장

[1부의 범죄사실과 많은 부분 중복되지만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에 비추어 간단히 요약]

II. 일본의 국제법상의 책임

1. 국가책임의 부인

일본은 일본군성노예제도가 성립된 이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1990년 6월 6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토오카 쇼지 사회당원의 군 '위안부' 조사 요청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군대위안부는 군, 국가와 관계가 없고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1991년 4월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한인 군 '위안부'로 보이는 명부가 발견되었을 때 한 노동성 관리는 "당시의 관계자들로부터 사정을 들은 결과 후생성 근로국도, 국민근로동원서도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1991년 11월 21일 전 아마구치현 노무보국회 동원부장 요시다 세이치가 언론에 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사실을 고백하여 보도되자 일본 외무성 관리는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다고 하였다.(박원순, 438. 또한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Statement of Japan(Right of Reply), UN DOC. E/CN.4/SR.34, p.16(1992))

그러나 민간에 의한 자료의 공개와 피해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993년 8월 4일 일본정부는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른바 '위안소'라는 강간수용소(rape camps)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직접 관여(involvement)하였음을 인정하고 '위안부'들이 피해자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된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다.¹⁾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사죄를 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는 1995년 7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

1) UN Doc. E/CN.4/1996/137, annex I. 일본 '내각 외정(外政)심의실'에 의한 자의 "중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조사결과 및 같은 날짜의 내각 관방(官房)장관 '답화'.

년을 기념하여 “이른바 ‘종군위반부’의 문제는 당시 일본군의 관여로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입힌 깊은 상처의 하나이다. 이는 도저히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나는 종군위반부로서 결코 아물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처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깊은 사과[‘おわび’]를 드린다”라고 하였다.²⁾

그럼에도 이러한 ‘사과’는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일본정부는 계속하여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실체법상의 근거를 들어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

① 국제형사법의 최근의 발전 또는 진보는 소급해서 적용될 수 없다;

② 노예범죄는 ‘위안소’를 통해 세워진 제도를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으며 노예제의 금지는 어쨌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용가능했던 국제법상 관습규범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③ 무력충돌중의 강간행위는 1907년의 제4 헤이그협약에 부속된 규칙이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효력을 가진 적용가능한 국제관습법규범에 의해서도 금지되지 않았다;

④ 전쟁법은 어쨌거나 일본군이 교전국의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행동에만 적용되고 따라서 일본군의 일본인 또는 조선사람에 대한 행위는 다루어지지 않는데 조선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에 병합되었기 때문이다.³⁾

더욱이 일본정부는 그 동안 일관되게 샌프란시스코조약과 이에 따른 개별 국가간의 배상조약 또는 평화조약 체결과 그 이행으로 전후배상문제는 모두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특히 한인 ‘위안부’와 관련하여 일본은 1965년의 한일협정의 체결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한국정부의 배상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기되었으며 더 이상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

법적 배상청구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위안부’ 개인에게는 그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정부는 또한 예비적 주장으로(alternatively) 피해여성들

2) McDougall's final report, annex, para. 3에서 재인용. [Gay J. McDougall,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UN Doc. E/CN.4/Sub.2/1998/13, 22 June 1998 (조시현 옮김, ‘맥두갈 보고서: 무력충돌중의 체계적 강간, 성노예와 노예제나 다름없는 관행 (1)’,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년 10월호 (통권 제24호), 63쪽과 ‘맥두갈 보고서(2):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설치된 ‘위안소’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분석’, 같은 잡지, 98년 11·12월호 (통권 제25호), 83쪽.)]

3) 여성폭력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Radhica Coomaraswamy) 여사의 보고서, UN Doc. E/CN.4/1996/53/Add.1.

이 가졌을지 모를 개별적 배상청구권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일본의 전쟁책임을 다룬 평화조약과 국제협정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인도적 견지에서 위로금이나 정착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일본의 배상책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일본정부는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모든 민사 또는 형사사건은 이제는 시효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시간적 장애 때문에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1995년 7월 "일본과 세계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고 특히 '위안부'에 관하여 일본대중으로부터 직접 모금하여 만들어진 '보상'(atonement, 속죄?)기금을 통하여 "일본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와 반성을 이 여성들에게 전달할" 것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2. 적용국제법규와 일본의 국제책임

(1) 국제책임 성립의 일반적인 요건과 일본의 국가책임

주권자인 국가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테제는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에 있어서도 타당하지 않다. 국제법에는 국가의 책임문제를 일반적으로 다루는 성문법전, 즉 조약은 아직 없으나 이 문제는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국제관습법 또는 법의 일반원칙에 맡겨지게 된다.

유엔의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가 1996년(48차 회기)에 잠정적으로 채택한 '국가책임에 관한 조문초안'(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에 따르면 국가는 자신의 모든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에 대한 국제책임을 진다.⁴⁾ 다시 말하여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국제법에 따라 어느 국가에 귀속되고 그 행위가 그 국가의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면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발생한다.⁵⁾ 국제법상 국가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⁶⁾ 그러나 국가의 국제책임문제에 있어서 누가 국가기관인가는 국내

4) 제1조. 초안문은 Report of the ILC on the work of its forty-eighth session, 6 May to 26 July 1996, UN Doc. A/51/10 (1996), ch.3, D. 이 초안은 현재 유엔 총회의 제6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법위원회는 초안의 제2독회를 하고 있다. 1999년 ILC 보고서, UN Doc. A/54/10(1999), paras. 49 이하 참조. 초안 제19조에 따르면 국제위법행위가 국제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국제불법행위(international delict)가 된다.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침해결과에 대한 국제책임"(international liability)에 관해서는 1978년이래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초안을 마련중이다. 1999년 ILC 보고서, UN Doc. A/54/10 and Corr.1 & 2 (1999), paras. 598-608 참조.

5) 조문초안 제3조.

6) 조문초안 제5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원칙의 관습적 성격을 인정하였다. *Difference Relating to the*

법에서의 취급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⁷⁾ 이들이 중앙정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의 어느 기능을 수행하는지 또는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⁸⁾ 또한 국내법상 적법한 국가의 행위일지라도 국제법상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⁹⁾

첫째 일본군성노예제도의 성립과 운영이 일본국의 행위로 인정되는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1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한 천황, 내각 수상과 대신들,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관리와 경찰, 육군대신을 비롯한 일본제국군대의 장교, 사병, 군속의 행위는 일본의 국가기관(State organs)의 행위임이 분명하다. 예컨대 일본군'위안부'의 징발과 운영에 관한 형식적 근거 법령이 된 "여자정신근로령"(칙령 제159호)은 일본 천황의 서명과 내각총리대신, 군수, 내무, 후생 등 4개 대신이 부서한 것이었다. 이 법령의 제정이전에 이미 설립되기 시작한 일본군'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은 물론 군'위안부'의 동원과 이송에 있어서도 일본정부와 군대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으며 국가적,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이 행사되었음이 인정된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도에 관한 구 일본제국의 관여를 인정한 바 있다.¹⁰⁾ 다만, 노동력대위.

또한 군'위안부'의 동원과 군'위안소'의 운영에 관여한 민간업자의 행위도 일본국의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국제법상 국가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행위의 주체는 군대와 같은 국가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는 국가기관의 자격(capacity)을 갖지 않는 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사인이나 집단의 행위일 지라도 이들이 사실상 국가를 대신하여(on behalf of) 행동한 경우에는 국가의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¹¹⁾ 다시 말하여 "어느 사람이나 사람의 집

Immunity from Legal Process of a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dvisory Opinio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ports 1999, para. 62.

7) ILC Yearbook 1973, 191-193쪽; First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 by Mr. James Crawford, Special Rapporteur, UN Doc. A/CN.4/490/Add.1, 1 May 1998; Add.2, 5 May 1998와 Add. 3, 11 May 1998(이하 '1차 보고서'), paras. 160-167.

8) 조문초안 제6조, 제7조 1항. 1차보고서, paras. 173-181, 190-1 참조.

9) 조문초안 제4조. 이에 대한 주석으로는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73, vol. II, 184-187쪽 참조.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설치 운영행위가 일본 국내법상 위법한 것이 되어 '국내법상 국가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의 경우와는 별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법에 의한 국가책임'은 '여자정신근로령'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한-일합방조약이 무효라면 '여자정신근로령'은 한국에 대해 무효), 소멸 시효기간의 경과도 우려되어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인다(김명기 외 5인, 「정신대 대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한-일간의 법적 제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37권 제2호 1992, 62-65쪽 참조)" 박원순, 445

10) UN Doc. E/CN.4/1996/137, annex I; McDougall's final report, annex, para. 9에 인용됨.

11) 조문 초안 제8조 (a). 제11조, 12조, 13조도 참조. ILC Yearbook 1974, vol. II (Part One), 283-285

단의 행위는 이들이 그 행동을 수행할 때 그 국가의 지시(instructions) 또는 감독이나 통제(direction or control) 아래 행동할 경우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여겨진다.”¹²⁾ 여기서 ‘사람’은 자연인과 사단이나 회사와 같은 법인도 포함한다.¹³⁾ 또한 국가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귀속되지 않는 행위를 나중에 수락하거나 추인한 경우에도 국가행위로 인정된다.¹⁴⁾ 제1부에서 자세히 언급한 버마로 갈 한인 ‘위안부’의 동원에 있어서 조선군사령부가 민간업자에게 모집을 의뢰한 사례는 좋은 예이다.

더욱이 이들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지시나 권한부여가 없었거나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본정부와 군대가 이들의 활동에 대해 ‘실질적 또는 포괄적으로 통제’했음(effective or overall control)이 인정될 경우 일본의 국가책임이 부정될 수 없다.¹⁵⁾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항소부(Appeals Chamber)는 “군대의 체제 안에서나 이와 연관되어 또는 국가기관과 결탁하여 행위한 사적 개인”은 사실상의 국가기관(*de facto* State organ)으로 여길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¹⁶⁾ 또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복을 입은 사람에 의해 납치된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군대식 제복’을 입은 이란 ‘혁명보위대’(Revolutionary Guards)의 차량탈취에 대한 이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시사적이다.¹⁷⁾ 이러한 국제법의 원칙에 비추어 일본군성노예제도에 관여한 민간업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일본에 귀속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밖에도 국가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과 손해의 발생이 요구된다는 논의도 있지만¹⁸⁾ 일본군성노예제도와 관한 일본의 행위가 고의적인 것임은 특별한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1부에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쪽; 1차 보고서, paras. 221-220 참조.

12) 1998년 국제법위원회 초안위원회에서 잠정 채택된 제8조 본문, UN Doc. A/CN.4/L.569, 3쪽.

13) ILC Yearbook 1974, vol. II (Part One), 286쪽.

14) 1차 보고서, paras. 281-286.

15) 이러한 국제기준에 대하여는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Judgment, ICJ Reports 1980, 3쪽, para. 74;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14쪽, para. 115. 또한 Prosecutor v. Tadic,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Prosecution of Persons Responsible f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Yugoslavia since 1991, Trial Chamber II, Judgment of 7 May 1997, para. 595과 Prosecutor v. Dusko Tadic, ICTY, Appeals Chamber, Judgement of 15 July 1999, para. 124 참조.

16) The Tadic Case, 앞의 주, para. 144.

17) Daley v. Islamic Republic of Iran, Award No. 360-1-514-1 (1988), 18 Iran-U.S. Claims Tribunal Reports 238쪽, para. 19.

18) 예컨대 UN Doc. A/CN.4/490/Add.4, 26 May 1998, paras. 109-130 참조.

둘째, 일본군성노예제도와 관한 일본의 국가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본에 귀속되는 행위가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은 앞의 기소장 제1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군성노예제도가 성립하고 운영된 시점에도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제2차대전 이후에 발전한 국제법의 소급적용이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법규로는 일본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있다.¹⁹⁾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이 서명, 비준한 중요한 국제조약으로는 국제관습법의 원칙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순서로 일본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도록 한다.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설치와 운영은 당시 존재하던 다수의 국제법규범을 위반하였고 보여진다. 이 규범에는 성문의 조약뿐만 아니라 관습법을 포함한다. 당시 일본이 가입, 비준한 조약으로는 국제노동기구가 마련한 강제노동조약과 부녀매매금지조약, 육전협약 등이 있었다. 당시 비록 성문의 조약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확립된 국제관습법으로는 노예제도의 금지를 들 수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그 끔찍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하여 비인도적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제군사재판소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명기되었다.” 박원순 441)

(2)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관한 국제법 위반

일본은 한인 여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동원하여 일본군성노예로 희생시킴으로써 노예제도의 철폐와 노예무역의 금지를 규정하는 당시 국제관습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1926년 9월 25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노예협약(Slavery Convention)이 내린 ‘노예제’(slavery)의 정의는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²⁰⁾ 노예협약 제1조는 노예제를 “소유권에 따라붙는 일부 또는 전부의 권한이 행사되는 개인의 지위나 상태”로 정의하고 ‘노예무역’(slave trade)에는 “사람을 노예에 파뜨릴 의도로 그의 포획, 취득 또는 처분에 관련된 모든 행위, 노예를 매매 또는 교환할 목적으로 하는 노예의 취득에 관련된 모든 행위, 매매 또는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노예의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 모든 처분

19)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조약 제1059호 1991.9.24), 제38조 1항은 재판소로 하여금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과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諸國)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을 적용하여 분쟁을 재판하도록 한다.

20) 1927.3.9 발효,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vol. 60, 253쪽. 2000년 5월 현재 76개국이 협약에 비준, 가입, 승계하고 있다. 일본과 남북한은 아직도 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행위와 일반적으로 노예를 무역 또는 운송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노예제와 노예무역의 금지는 1815년 '노예무역의 세계적 철폐에 관한 선언'(Declaration Relative to the Universal Abolition of the Slave Trade)이 채택된 이래 1885년의 중앙 아프리카에 관한 베를린 회의의 일반의정서(General Act of Berlin)와 1889-90년의 브뤼셀회의 일반의정서(General Act of the Brussels Conference)에 이르러서는 '노예를 거래하는 것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금지된다'고 확언할 수 있었다.²¹⁾ 이러한 노력은 국제연맹에서 계속되어 1926년의 노예협약의 체결을 본 것이며 오늘날 국제연합에서도 계속되고 있다.²²⁾ 이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관한 가장 오래된 인권규범의 하나로 정착된 노예제와 노예무역의 금지는 일본군성노예제도가 성립된 당시에 이미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의 지위에 있었음이 명백하다.²³⁾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전쟁중이거나 평화시이거나 이미 제2차대전 이전에 국제범죄로 처벌됨은 이미 제1부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일본은 1926년 노예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일찍이 1872년에 노예상을 처벌한 예가 있으며 당시 일본 형법도 약취, 유인죄를 처벌하는 등 노예제와 관련한 국내입법을 부분적이지만 시행하였다. 따라서 일본이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에 구속되는 것은 분명하며 이와 반대되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다.

피해자의 증언과 각종 자료를 통해 볼 때 제1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은 일본군의 노예로서 부리기 위해 군'위안소'를 설치하고 한인여성들을 속임수를 쓰거나 납치하여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하였으며 이들을 조직적, 지속적으로 강간함은 물론 생명

21) 노예협약 전문. 또한 John P. Humphrey,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in the Middle Twentieth Century*, Richard B. Lillich,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blems of Law, Policy, and Practice* (2nd ed.) (Boston, Toronto: Little Brown & Co., 1991), p. 1에 채수록. 한 집계에 따르면 1815년부터 1957년까지 채택된 노예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은 300건이 넘는다. Updated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and follow-up to the conventions on slavery, Working paper prepared by Mr. David Weissbrodt and Anti-Slavery International, UN Doc. E/CN.4/Sub.2/2000/3 (26 May 2000), para. 3.

22) 특히 Protocol amending the Slavery Convention signed at Geneva on 25 September 1926, approv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94 (VIII) of 23 October 1953, entered into force 7 December 1953,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82, 51쪽;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adopted by a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convened by ECOSOC resolution 608 (XXI) of 30 April 1956 and done at Geneva on 7 September 1956, entered into force 30 April 1957,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266, 3쪽 참조.

23)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Ltd. (Belgium v. Spain)*, Judgment of 5 February 1971, I.C.J. Reports, 1970, p. 32. 또한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3, vol. II, pp. 53, 198-199;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24,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iftieth session, Supplement No. 40 (A/50/40)*, annex V, para. 8 참조.

권을 포함한 이들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여 인간이 아닌 하나의 물건처럼 다른 노예 상태에 빠뜨렸음이 명백하다. 이로써 일본은 국가가 직접 노예제를 창설, 유지하는 전대 미문의 전례를 통해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더욱이 일본정부와 군부는 강제동원된 '위안부'들의 전장과 위안소로의 운송에 직접 관여하였는데 이는 국가 스스로 노예무역에 종사한 것이 되며 이를 금지하는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3)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법 위반

일본은 일본군성노예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일제가 1925년 들어 일괄적으로 가입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일련의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조약들은 19세기 후반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의 유괴가 유럽일대에서 빈발하자 이러한 사태를 우려한 민간단체의 압력으로 유럽의 각국 정부가 추진하여 만들어지게 되었다.²⁴⁾ 이러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조약으로는 첫째, 1904년 5월 18일 파리에서 서명되었으며 일본이 1925년 10월 21일 가입한 '백인노예매매(White Slave Traffic)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정'을 들 수 있다.²⁵⁾ ...[보충필요]

둘째, 일본은 1910년 5월 4일 파리에서 체결되었으며 일본이 역시 1925년 10월 21일 가입서를 기탁한 '백인노예매매(White Slave Traffic)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약'²⁶⁾을 위반하였다. 이 협약 제1조는 우선 "다른 사람들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도덕한 목적으로 미성년 부녀를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 할지라도 고용, 유괴 또는 권유한 모든 사람"("quiconque, pour satisfaire les passions d'autrui, a embauché, entraîné ou détourné, même avec son consentement, une femme ou fille mineure, en vue de la débauche...")을 처벌할 의무를 모든 계약국에게 지우고 있다. 또한 제2조는 "다른 사람

24) 박원순, 442.

25) 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vol. 1, p. 83;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2, p. 2131. 이 협정은 1948년 12월 3일 유엔 총회에 의해 승인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되었다.(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30, p. 23) - 232
23) 확인) 이 협약은 '매춘(또는 '추업'(醜業))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자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26)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 of 4 May 1910. 협약문은 British and Foreign State Papers, vol. 103, p. 244; Martens, Nouveau recueil général de traités (3d ser.), vol. 7, p. 252. [영문 조약문 찾을 것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vol. 3, p. 278] 이 협약은 1948년 12월 3일 유엔 총회에 의해 승인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개정의정서(amending Protocol)는 1949년 5월 4일 뉴욕 레이크 석세스에서 서명되었다.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30, p. 23과 vol. 98, p. 101.(확인)

들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기 또는 폭력, 협박, 권한남용 기타 모든 강제수단을 사용하여 부도덕한 목적을 위해 성년이 된 부녀를 고용, 유괴 또는 권유한 모든 사람”²⁷⁾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년여성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두 조항은 모두 “함께 범죄를 구성하는 여러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 자행되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제1부에서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한인여성과 미성년인 소녀들이 일본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들의 동의 없이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일본군부대로 끌려갔음이 명백하다. 설령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군‘위안부’의 모집이 민간업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은 사실에 의해 일본은 국가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경우
+
강제/성
인강

이 협약 제11조는 체결국이 식민지 등지에(“dans une ou plusieurs de ses colonies, possessions ou circonscriptions consulaires judiciaires”) 이 협약을 지키려는 경우 기탁국인 프랑스 정부에 그 의도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일본이 서명시에 한 선언문은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vol. IX, p. 430] 이 협약이 당시 강점되었던 한 국가에서 벌어진 협약이 금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지와 일본이 이에 대해 협약상의 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위안부’를 권유 유괴하는 행위의 기점이 조선반도였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동남아시아 등에 설치한 위안소에 이송 중, 일본의 선박 내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일본군‘위안부’동원의 전 계획과 지령이 일본의 ‘육군중앙’으로부터 내려간 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식민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책임은 해제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²⁸⁾ 다시 말해 협약이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부녀인신매매에 관한 범죄의 행위지가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과 일본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지역과도 연결되므로 협약의 적용범위 안에 있고 일본은 따라서 협약상 이러한 범죄를 처벌할 의무를 지는 것이 명백하다. 일본은 이러한 협약상의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일본정부와 군부 스스로가 국가기관을 조직

식민지

27) 영어본 제2조는 "any person who, to gratify the passions of others, has by fraud or by the use of violence, threats, abuse of authority, or any other means of constraint, hired, abducted or enticed a woman or a girl of full age for immoral purposes, [even when the various acts which together constitute the offence were committed in different countries, shall also be punished]". 1933년의 ‘성년여성인신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of Full Age) 제1조는 동의를 있는 경우에도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고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조약문 확인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vol. 150, p. 131) 일본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협약은 1947년 10월 20일 유엔 총회 결의 제126(II)호에 의해 승인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되었다.

28) 阿部浩己, 「軍隊慰安婦問題の法的責任」『法學セミナー』, 1993年 10月號, 65쪽; 박원순, 442-3에서 재인용.

적으로 동원하여 부녀자를 강제연행하고 군'위안부'로 전락시켜 협약이 금지하는 범죄를 국가차원에서 저지름으로써 협약 전체를 부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셋째 일본은 1921년 9월 30일 제네바에서 체결되고 일본이 1925년 12월 25일 비준서를 기탁한 '부녀와 아동의 인신매매의 진압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였다.²⁹⁾ [구체적인 협약의무 보충]

이 협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일본은 조인시부터 식민지인 조선, 대만, 관동 조차지를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그 이후 남 사할린 위임 통치령 남양군도도 추가로 제외시키고 있다.³⁰⁾...

지금까지 살펴본 부녀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들은 오늘날 국제관습법으로 널리 받아들여진다. 20세기에 들어서며 1904년의 국제협정을 필두로 여성의 성이 매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일련의 조약들이 활발히 체결된 가운데 적어도 성년이 되지 않은 여성들을 강제적 수단으로 권유, 유인, 납치하여 성착취를 하는 것은 1930년대에 이미 확립된 국제관습법상 금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³¹⁾ 1921년 협약은 1947년 11월 12일의 의정서에 의해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른 '부녀와 아동의 인신매매의 진압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는 남녀 아동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1910년 협약 제1조가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색출하고 소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³²⁾ 이 규정은 이전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임과 동시에 미성년 여성에 대한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49년 채택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³³⁾는 이전의 인신매매와 관련된 협약을 통합하고

29)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entered into force on 15 June 1922,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vol. 9, p. 415. 이 협약은 1947년 10월 20일 유엔 총회 결의 제126(II)호에 의해 승인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되었다.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concluded on 30 September 1921, as amended by the Protocol signed at Lake Success, New York, on 12 November 1947,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7(1950), p. 40.

30) 吉見義明, 「資料集-從軍慰安婦」, 東京 大月書店(1992), 金淳鎬 역, 瑞文堂(1993), p. 63. 일본의 선언문 찾을 것. 이에 대해서는 "국제법 가입 상에서의 일제의 이런 행위에는 일제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내재해 있기보다는 오히려 일본 자국내 성인 여성, 그리고 피식민국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매매에 대한 국제법적인 결집들을 제거하고자 했을 어떤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하겠다"는 주장이 있다. 신영숙·조혜란, 235-6.

31) 앞에 언급한 1933년 국제협약 이외에도 국제연맹은 1937년에 이와 관련된 협약초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32)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gree to take all measures to discover and prosecute persons who are engaged in the traffic in children of both sexes and who commit offenc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 of the Convention of May 4, 1910."

33)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the Suppression of Traffic Convention) and Final Protocol, entered into

(consolidated the earlier instruments relating to the traffic in persons) 오늘날 이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 협약에 담긴 원칙들이 가지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는 여성인신매매를 단속하여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³⁴⁾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에 관한 선언' 역시 여성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다.³⁵⁾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국제관습법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일본군성노예제도의 성립과 운영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덧붙여 일본의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 위반행위는 궁극적으로 앞에서 밝힌 노예금지에 관한 국제법 위반과 병행하여 이루어졌음을 주의해야 한다.

(4) 강제노동금지협약의 위반

일본은 또한 일본군성노예제도를 통하여 당시 일본정부가 비준, 가입한 '강제노동금지협약'을 위반했다.³⁶⁾ 이 협약 제2조는 '강제노동'을 "스스로 자원하지 않았음에도 불이익의 위협하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노무"로 정의한다.³⁷⁾ 여기서 말하는 노무의 범위 속에 '성적 위안'이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조약의 원문이 단순한 '노동(work)'뿐만 아니라 '역무(service)'를 병기하고 있고 매춘 및 포르노를 위한 아동의 강제매춘을 강제노동에 포함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의 해석³⁸⁾에 비추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협약은 이러한 강제노역은 여성에 대해서 완전히 금지하고(제11조) 강제노역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제도가 강제노동금지협약을 위반한 것인지의 문제는 국제노동기

force on 25 July 1951,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96, p. 271; 1958년 5월 1일 일본 가입; 1962년 5월 14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93호)

34)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35)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04 of 20 December 1993.

36)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1930.6.10 채택, 1932.5.1 발효, UNTS 39권, 55쪽. 일본은 1932년 11월 21일 가입하였다. 이 조약에 일단 가입하면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조약의 폐기를 금지하고 그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폐기를 통고 하더라도 통고한 때로부터 1년 이후 그 폐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일본은 1944년 11월 21일까지 그 효력의 적용을 받게 되어 제2차세계대전의 거의 전기간동안 이 조약에 구속되었다." 박원순 441-2(그러나 일본이 폐기를 통고하였는지?)

37)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38) International Labour Office, "Report III: Report of the Commission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s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General Report and Observat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s 81st Session 1994, Geneva.

구에 제기된 바 있다. [보충...ILO전문가위원회는 이 제도가 '성노예'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³⁹⁾ "긴급한 경우, 즉 전시(戰時) 또는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이나 가축의 유행병, 동물류, 곤충류 혹은 식물류의 해로운 물질의 침입과 같은 재앙이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일반적으로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사정"이 있는 경우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강제노동금지협약 제2조 2항 (d)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⁴⁰⁾ 또한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특히 "긴급(emergency)이라는 개념은 협약이 들고 있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필요로 하는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건을 뜻한다"고 하고 "긴급에 관한 제2조 2항 (d)는 - 전쟁, 화재 또는 지진의 경우에 - 어떠한 종류의 강요된 노역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백지허가는 아니고, 다만 주민에 대한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는데 엄격하게 필요한 노역에 대해서만 원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⁴¹⁾ 예컨대 국제인권규약 제4조 2항은 특히 노예제도·노예매매의 금지와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제8조)를 비상사태가 존재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전문가 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⁴²⁾]... 따라서 일본이 강제노동금지협약을 위반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5)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한 국제형사법 위반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하여는 제1부에서 자세히 고찰하였다. 일본은 인도에 반한 죄를 처벌하여야 할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며 아직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보충할 것]

"비인도적 범죄는 2차세계대전후 독일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6조 C항 및 일본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 및 양 군사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박원순 444

"위 조례들은 다같이 비인도적 범죄를 "전쟁전 또는 전쟁중 모든 민간인에 대해 행해진 살인, 잔혹행위, 노예적 혹사, 강제이주 및 그밖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범행지 국가의 국내법에

39) Individual Observation concerning Convention No. 29, Forced Labour, 1930: Japan,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Report III, Part 4A,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4th Sess., 1996.

40) Individual Observation concerning Convention No. 29, Forced Labour, 1930: Japan,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Report III, Part 4A, 85th Sess.,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1997), 우리말 번역에는 도츠카 에쓰로우(戸塚悦朗), '일본이 모르는 전쟁책임'(法學セミナー, 1997.5., No. 509),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모임 (1997), 202쪽.

41) 같은 문서.

42)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 Geneva, June 1999, para. 8.

대한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박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전쟁범죄 및 평화에 대한 죄와 나란히 규정된 비인도적 범죄의 유형은 무엇보다도 다른 죄목과 구별된다.

"비인도적범죄는 "전승국의 자의적 권한 행사가 아니라 - - - 동헌장이 제정될 당시 존재했던 국제관습법의 표현"이었다. 대체로 비인도적 범죄로 분류되고 처단되었던 내용은 이미 국내법의 형벌법이나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들이었다. 따라서 국제군사재판소의 헌장이 규정한 비인도적 범죄는 이러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일본의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실시 당시에도 이미 국제법상 그러한 제도는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며 전후 그 금지위반행위는 비인도적 범죄라는 범주로 처벌이 가능했던 것이다." 박원순 445.

"비인도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우발적인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정부에 의한 조직적 기획과 수행이 요구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Vol. 15, 1949, 134-136쪽) 이렇게 보면 전쟁범죄 보다는 비인도적 범죄의 입증이 어렵게 된다.(따라서 비인도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증이 손쉬운 전쟁범죄로 처단할 수 있다고 본다. Theodor Meron, Rape a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J, 87(1993), 428쪽)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진상에 따르면 중군위안부제도는 일본정부와 군대가 조직적으로 수행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아무도 부인하기 어렵다." 박원순 444

(6) 국제인도법의 위반

일본군성노예제도에 관여한 개인들이 국제인도법규의 위반행위, 즉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제1부에서 살펴보았다. 국제인도법의 위반은 이러한 개입책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가책임도 가져온다. 국가는 국제인도법규 또는 전쟁법규의 준수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일본은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성립,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여성들에 대하여 강간, 살인 등 전쟁범죄가 자행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촉진하였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일본군성노예제도는 개인들의 전쟁범죄를 단순히 용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조직적인 전쟁범죄를 계획하고 집행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뒤에서 자세히 검토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일본정부는 전쟁범죄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제1부에서 자세히 검토한 바와 같이 당시 일제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였으므로 일본군성노예제도에 관련하여 1907년 헤이그 제4 협약과 규정을 비롯한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일본은 ...이의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진다.

[보충할 것]

"19세기 후반부터 제1차대전 전에 이르는 기간동안 수많은 전쟁법규가 국제적인 조약으로 발전하였다. 그 가운데 1907년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 제4호 협약으로 채택된 '육전법규관례에 관한 협약(Hague 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Usage of War on Land, 이하 육전협약)'은 "채약국은 - - - 주민 및 交戰者가 문명국간에 수립된 관행으로부터, 그리고 인도

의 법칙 및 공공양심의 요소로부터 오는 국제법 원칙의 보호 및 지배하에 있음을 선언"하도록 하고 있다. 1911년 12월 13일 이 협약에 가입한 일본이 법적 구속력을 받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이 협약의 내용은 당시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박원순 443

"이 조약의 부속서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규칙」 제46조는 교전국에 대하여 점령지에서 "가족의 명예와 권리, 개인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인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징집한 사건에 대하여 전후 연합군에 의하여 설치된 '바타비아' 전법재판소에서 일본 군인과 민간인 10여 명에게 사형을 비롯한 유죄판결을 내렸던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재판은 바로 이 조약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박원순 444.

3. 일본의 국가책임의 내용과 해제방법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법리는 국제법위반행위가 어느 국가에게 귀속되고 위법성을 배제할 사유가 없어⁴³⁾ 국가책임이 인정될 경우 국가는 일반적으로 배상, 원상회복, 금전배상, 사죄, 책임자 징계와 처벌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⁴⁴⁾ [반보벤과 쥬아네 보충] 이러한 국가책임은 개인책임과 국내법상의 국가책임 국가과는 달리 시간적 제약을 받을 여지가 없다. 국제법위반행위에 대해 시효를 정하고 있는 국제법규는 없다.⁴⁵⁾ 일본이 그 동안 위에서 살펴본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본의 국가책임은 계속된다.

아래에서는 일본이 지는 국가책임의 내용과 그 책임의 해제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죄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의 사죄는 자신이 저지른 위법행위를 시인하고 책임을 수락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동안 일본정부가 한 '사죄'라는 것은 이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진상을 왜곡하고 은폐하여 피해여성들을 다시 한번 능멸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서있는 것이었다.

43) 국제법위원회의 조문초안은 이러한 사유를 동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항조치(countermeasures), 불가항력과 우연한 사건, 위난(危難, distress), 긴급피난(state of necessity), 자기방위(self defence)로 나누고 있다. 제29조-제34조. 일본군성노예제도와 관련되는 한 이러한 항변을 제기할 여지는 전혀 없다.

44) 조문초안, 제42-45조.

45) 阿部浩己, 앞의 글, 66쪽; 박원순 446에서 재인용.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후책임의 시인에 지독히 인식하였음과 일본사회 전반의 전쟁책임 불감증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또한 과거의 전쟁을 미화하거나 그 희생자들의 피해를 애써 지워버리려는 심리를 대변할 뿐만아니라 일본정부의 전쟁책임 불이행이 일본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야기하였다.

그 동안 간간이 있어온 일본정부와 그 대표자들의 식민지 지배와 잔혹행위에 대한 사과의 발언은 그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일간에 벌어진 이 언어의 곡예는 일본의 전후책임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더구나 그 사이에 간헐적으로 있어 왔던 일본 고위관리들의 망언은 공식석상의 사죄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사죄가 단순한 말장난에 그친다는 점은 그 진실성에 대한 의문과 금전적 배상, 교과서 개정 등의 후속조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사과 발언록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1965.2.20 한일회담(당시 일본 외무장관) - 양국의 불행한 관계에서 연유하는 한국국민의 대일 감정에 유념하고 깊이 반성하는 바이다.

1983.1.11 방한만찬답사(나카소네 총리) - 과거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서 우리는 이 것을 엄숙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1984.9.6 전두환대통령 방일만찬사(히로히토 일왕) - 우리는 귀국과의 교류에 의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금세기의 한 시기에 있어서 양국간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유감이다.

1984.9.7 전대통령 방일 오찬사 (나카소네총리) - 우리의 잘못에 깊은 유감을 새기고 장래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굳게 결의하고 있다.

1990.5.24 노태우대통령 방일 만찬사(아키히토 일왕) - 일본에 의해 초래된 과거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의 국민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여 본인은痛惜의念을 금할 수 없다.

1990.5.24 노대통령과 정상회담 (가이후 총리) - 우리의 행위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슬픔을 체험하게 된대 대해 겸허히 반성하며 솔직히 사죄를 드리고자 한다

1991.1.9 방한만찬답사(가이후 총리) - 과거를 잊지 않고 그 반성을 현재에 살림으로써 미래를 향한 시야가 열릴 것이다

1992.1.16 방한만찬답사(미야자와총리) - 일본은 반성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귀국국민께 반성과 사과의 뜻을 말씀드린다

1993.11.6 김영삼대통령과 정상회담(호소카와총리) - 과거 우리의 식민지배시절에 한반도의 여러분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강요한데 대해 가해자로서 우리가 한 일을 깊이 반성하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진사드리는 바이다.

1994.3.24 김대통령 방일 만찬사(아키히토 일왕) - 몇 년 전 한국인에게 다대한 고난을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슬픈 마음을 표명한 적이 있지만 지금도 변치 않는 마음이다. 우리 국민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한국국민과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 왔다.⁴⁶⁾

[보충?]

(2) 진상규명

46) 박원순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진상의 공개와 규명은 국가의 인권보장의무의 한 내용이며 피해자의 인권의 하나이다.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한동안 관여사실 조차 부정하다가 겨우 최근에 들어와 국제여론에 밀려 일본군의 군'위안부' 동원과 운영에 대한 관여사실과 부분적인 강제성을 인정하였다. 한국정부 역시 이러한 일본정부의 발표에 대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의 완전한 발굴과 조사"를 일본정부에 기대하는 성명을 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 이상 일본측에 닥달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정부 역시 더 이상 진상조사 작업을 추진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본정부는 오히려 (1995년에?) 발표한 것 이상 갖고 있는 자료조차 공개를 꺼리고 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실의 공개는 배상의 한 범주로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을 은폐하면서 진정한 사죄와 재발방지가 이루어질 수 없다. [독일의 경우 보충] 일본정부가 완전한 진실규명을 위하여 전시문서의 공개와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피해여성들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원상회복 - 명예회복, 생존자 본국송환, 유골송환

국제위법행위의 피해자들의 모든 상태를 그 행위가 있기 전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배상(reparation)의 기본원칙이다.⁴⁷⁾ 그러나 군'위안부'들의 빼앗긴 젊음과 생명, 가해의 상처들은 원상회복(restitution)이 불가능하다.

일본군성노예의 피해여성들은 거듭되는 진상의 부인과 은폐, 왜곡으로 인하여 마치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선 것처럼 언급되어 거듭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이들의 빼앗긴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킬 의무를 진다.

피해여성들은 또한 군'위안부'생활로 인한 한없는 수치심으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곳 현지에서 매춘부로 전락하거나 또는 다른 직업을 전전하는 고통의 길을 걷고 만 사례들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최근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잔류한 피해자들 일부가 고국을 일시 방문하거나 영주 귀국하는 사례가 있다. 이들 잔류피해자들의 실상에 대한 조사와 영주귀국을 원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배상책임의 중요한 이행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일본정부는 사할린동포들에 대하여 취한 영주귀국대책⁴⁸⁾이 군'위안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현지 잔류 희생자들의 숫자파악이나 증언채록을 위한 답사 따위의 노

47) 박원순 참조.

48) 좀더 설명 필요?

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생존피해여성의 명예회복과 귀국대책에 못지 않게 사자(死者)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유해를 고국땅으로 송환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영혼의 안식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에게 큰 명예회복방안이 될 것이다. 제1부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많은 종군위안부들이 전쟁 중에 사망하거나 전쟁 종료 직후 학살되었다는 증언들이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학살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한 현지답사나 조사는커녕 자료의 미공개로 피학살자들의 숫자와 장소와 같은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유골발굴 등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일본군성노예의 피해여성들의 최소한의 명예회복과 현지에 버려진 피해자들의 국내 이주, 유골 송환 등과 같은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